

Executive Summary for Translation below: 929 words

뉴저지에 거주하는 영어 학습자

2021년 팬데믹 이후의 불평등 노출과 기회 확대

코비드 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원격 학습은 뉴저지 공립 교육기관에서 영어 학습자들 (EL)이 겪는 불평등이 명확하게 조명되었습니다. 교육자, 학부모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은 팬데믹 전후의 EL 교육을 규정하는 뉴저지 이중언어 교육규정 (Bilingual Education Code)의 의거한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군과 규정 자체의 미흡을 포함한 뉴저지주의 불충분한 지도, 지원 및 집행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뉴저지 교육기관내의 EL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하고 학교측이 이러한 요구사항과 권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정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의 상기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한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소위 “광범위한 영어 학습자의 요구사항 미충족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서 2021년 9월 뉴어크 공립학군 (Newark Public School District)와 법원 명령을 체결했습니다.

뉴저지에 소재한 여러 학군의 변화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뉴저지의 EL 학생들, EL 학생들과 이민자 부모들, 제언어로서의 영어 (ESL) 교사들과 이중언어 교사들, 행정직원들 및 상담사들의 경험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원격 교실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 EL 중심의 교육자 개발, 이중언어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EL 학생의 권리와 많은 경우 유색인종인 이민자 학생의 권리를 학군측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한 사례를 학생들, 부모들, 선생님들, 상담사들 및 행정직원들의 경험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 상담사, 행정직원, 또는 학교측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기관이 EL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뉴저지의 이중언어 교육규정이 체계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현규정과 미래의 규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L 학생들, EL 학생들과 이민자 부모들 및 EL과 이중언어 교육자들의 냉혹한 경험담은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학군내의 평등한 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2장은 미국 전역과 뉴저지의 EL 학생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3장은 Understanding ESL/Bilingual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or/Supervisor Survey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중의 ESL/이중언어 서비스의 이해: 교육자/관리자 설문조사, 이하 "ESL/이중언어 서비스 설문조사 이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80명의 뉴저지 이중언어 및 ESL 교육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3장은 다섯개의 뉴저지 이중언어 교육자들의 경험담과 EL 학생들과 부모들의 경험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EL 학생들과 영어가 미숙한 부모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은 적절한 정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학군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본 보고서가 참조하는 ESL/이중언어 서비스 설문조사 이해 및 본 보고서의 추천사항은 *NJ Consortium for Immigrant Children (뉴저지 이민자 아동 연맹 (NJCIC))*, *NJ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NJ Bilingual Educators (뉴저지 외국인 대상 영어교사 협회/뉴저지 이중언어 교육자 (NJTESOL/NJBE) 및 Education Law Center (교육법 센터 (ELC))의 공동 작품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뉴저지 교육부, NJDOE) 및 Bilingual Education Code (이중언어 교육규정, 즉 영어 학습자 (EL), 영어 미숙자 (LEP) 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의 추천사항에서 반영하듯 상기 용어는 자산 기반의 언어학적 및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현재의 교육학적 연구와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학군과 NJDOE측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모든 학군이 뉴저지 이중언어 교육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투명한 준수 및 책임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 특수 교육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불평 조사" 제도를 설립해서 EL 학생 보호법 위반 보고에 대응한다.

- NJDOE 문서의 용어를 변경해서 현 교육 조사 및 자산 기반 관점에 부합하도록 한다.
- 내용 및 개념의 이해를 돕는 모국어 및 대상 언어 지원을 포함한 언어 지원을 포함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언어 지원의 의미를 확립한다.
- 법규에서 요구하는 해당 학년 수준의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EL 학생이 듣는 모든 수업에 상기 언어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러한 언어 지원을 지지한다.
- 장애 EL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모든 교사들과 직원들은 EL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모든 학군의 3개년 계획에 모든 EL 관련 교사와 교사후보, 상기 교사들을 평가하는 모든 관리자와 행정직원 및 모든 사무직원들을 위한 EL 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 EL 학생과 LEP 가족들을 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 해당 학군의 중요한 정보 및 전달사항을 영어를 못하는 부모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 EL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을 설정하고 광범위하게 알려준다.
- EL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뉴저지 PK-12 (어린이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불충분한 이중언어 및/또는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BIPOC) 교육자, 정신 건강 전문가, 상담사 등을 지원하고 고용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EL 학생들이 Seal of Biliteracy (이중언어 인증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을 설정한다.